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이성배 의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38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도시공원 등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장소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재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에 대한
제한의 법적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으므로
조례 개정 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법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및 공원녹지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시된 바,

본 조례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